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4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3월 29일, 교육감
상정일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 내용	• 기흥중학교 시설 부지 내 (가칭)체육건강교육 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용인시와 업무협약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고자 함.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9일, 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8년 4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김기서)

가. 제안이유

- 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 나. 기흥중학교 시설 부지 내 (가칭)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및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협약대상 : 용인시

○ 협약방법

- 기본계획 수립 →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전 동의 → 업무협약 체결

○ 협약목적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흥중학교 시설의 교육적 활용
- 기흥중학교에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활용하고 공유

나.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교육청	용인시	주요시설(안)	비고
본 관 (지상4층)		○		경기체육건강진흥센터(교육청) 평생교육시설(용인시) (연면적 6,500㎡)	공동사용
별관	실내수영장 (지하1~지상1)		○	메인홀 보조홀 탈의실 샤워실 등 (1,650㎡×3,000천원)	메인홀 (25m×6레인)
	실내체육관 (지상2)		○	체육시설 기계실 사무실 물품습 등 (1,650㎡×2,500천원)	
운동장	지 상	○		체육공원 등 (4,000㎡)	
	지하(1층)		○	주차장 (4,000㎡×1,500천원)	주차 150대
기 타		○		기존건물 철거(합숙소, 급식실)	



○ 교육청

- 본관(리모델링)
- 지상(체육공원 등)
- 기타

○ 용인시

- 별관(수영장, 체육관)
- 지하주차장
- 기타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춘금)

※ 검토보고서 요지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업무협약서----- [별첨 2]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수석전문위원 : 박 춘 금

□ 검토의견

I.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

-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II. 예산 및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III.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이행함

IV. 세부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기흥중학교 시설부지 내 가
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및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
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임.

○ 본 사업 진행은 2019년 2월 28일자로 폐교 예정인 경기도 기흥중학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도교육청은 부지제공 및 리모델링, 지자체는 투자협약 시설의 건립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과 분업을 통해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폐교 활용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판단됨.

○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는 용인시 150억원, 경기도교육청 75억원, 총2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될 사업임.용인시는 별관으로 있는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지하주차장 등의 건립을 담당할 예정임. 도교육청은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리모델링과 운동장 체육공원 조성을 맡아 진행할 예정임. 센터 본관은 1층 평생학습관, 2층 공용강의실, 3층과 4층은 건강 증진 체험실, 체력분석실,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등으로 도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임.

○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될 체육건강진흥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학생건강진흥 정책연구,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정책연구 관련해서는 도내 11만명에 달하는 저체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체력 비만학생 해소, 보건교육, 보건환경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공동정책 연구 등이 포함되고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학생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체험학습관 운영 등이 제시되었고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수영장 등을 활용하여 초등교사 수영 연수 등이 제시되었음.

○ 본 사업은 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공동투자사업으로 「용인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및 폐교에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여 용인시와 도교육청이 사업대상을 분리하여 기관별 개별공사가 필요하고 개별시설물에 대한 소유권한 및 관리·운영권한 명기해야 함. 또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요건 관련하여 폐교활용법 제5조²⁾, 동법 시행령 제3조의3³⁾에 따라 폐교당시 통학구역 내 지역주민의 50/10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2018년 2월 말 현재 통학구역 총인구 35,768명의 50%인 17,88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음.

V.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28일자로 폐교 예정인 경기도 기흥중학교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도교육청은 폐교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투자협약 시설의 건립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과 분업을 통해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폐교 활용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1)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시설 활용을 위한 협약서(안)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는 기흥중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기흥중학교 시설 부지 내에 (가칭)체육전강교육진흥센터 및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 ①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시 시설물 투자를 위한 부지 제공 및 본판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② 용인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기흥중학교 부지 내 체육관, 수영장, 지하주차장 건축을 시행한다. ③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는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여 정한다.

제4조(효력 및 해지) ①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외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외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지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서명한 날로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서명) _____



용인시장 정 찬 민
(서명) _____